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16 발의연월일: 2025. 2. 17.

발 의 자:최수진·김선교·인요한

조정훈 • 유용원 • 이상휘

박준태 · 김장겸 · 신성범

최보윤・김 건・이종욱

의원(12인)

제안이유

국가 간 기술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연구자산 등의 유출 사례 및 탈취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 미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의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 마련과 제도 도입을 통해 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연구보안 체계가 미비한 국가와는 연구 협력을 지양하는 상황임. 글로벌 기술 선도국과 연구 협력 강화를 통해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연구보안 체계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일반과제와 구분하여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안이 필요한 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의 분류 근거와 보 안과제 수행기관의 보안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 응만으로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잠재적 중요기술에 대한 관리가 제한 적임. 또한, 연구성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보안점검 조치 명령의 시정 기한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연구현장에서 연구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의 근거 부재 등 연구자산 보호·관리 체계가 미흡한 한계가 존재함.

이에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현행 보안등급을 세분화하여 중간등급의 보안과제(이하 "민감과제"라 한다)를 신설하여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 현장의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범부처 보안지침을 수립하되 필요시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로 별도 보안지침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체계를 정비 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제3항 신설).
- 나. 잠재적 중요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해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 간 보안등급을 신설함(안 제2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다. 보안과제의 성과 소유권 이전시 의무와 연구개발기관의 보안관리조치 의무를 상향입법하는 등 연구보안 관리를 체계화 함(안 제21조제6항·제7항 신설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 라. 연구현장의 보안 업무 부담 완화 및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연구보안 정책 이행을 지원할 전담 집행조직 근거를 마련함 (안 제21조의2 신설).

마. 단순 보안대책 위반이 바로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도록 시정명령 미이행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연구보안 부정행위의 범위를 보안 과제의 보안사항 누설·유출에서 보안과제·민감과제의 성과 누설·유출로 확대함(안 제31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보안이 필요한"을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를 "제4항의 보안과제 또는 제5항의 민감과제"로,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을 "제9항에 따른 업무를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수행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에 따른 보안

대책의 내용,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를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안 과제·민감과제"로, "제3항"을 "제9항"으로, "조치"를 "조치 등에 관하 여 필요한"으로 한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사항 준수를 위한 보안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지침에 추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 로 보안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안지 침에 따라 보안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보안과제로 분류하지 않았으나 유출 시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또는 연구개발 성과 소유 연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과의 소유권을 이 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보안책임자 지정

- 2. 수행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3. 수행 연구자의 외국 접촉 및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수행 등에 대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조치
- 4. 수행 연구자가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 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정보의 관리조치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
-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마련·시행 실태
 및 제8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보안 전담기 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2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업무에 대한 지원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상담 · 홍보 · 교육 · 실태조사
 -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기반 조성
 -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
 -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연구 보안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서의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4항"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을 "분류되거나 제21조제5항에 따라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로한다. 4. 특별한 사유 없이 제21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제33조제1항 단서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조(적용 범위)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	
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u>.</u>
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	3. <u>제21조제4항</u>
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
리) ① (생 략)	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②
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계평가(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최	
종평가(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	
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u>체21</u>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조제4항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② (생 략)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한 연구 개발과제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 니하거나 평가단 구성 시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⑧ (생 략)

-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생 략)
 -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 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 과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② (현행과 같음) ③	1
<u>제21조제4항</u>	
	①
 제21조제4항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 안)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 재산적 가치 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 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

③ ~ ⑥ (현행과 같음)

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국 |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사항 준수를 위한 보안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사 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 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지침에 추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 도로 보안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직접 수행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안지 침에 따라 보안대책을 마련 · 시행 하여야 한다.

<u>4</u>) -					_
					_
					_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7
7	이정ㅎ	누			_

할 수 있다.

<신 설>

<u><신</u> 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 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개발기관은 보안교육 실시, 보안 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 다.

<u><신</u> 설> <신 설> ___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보안과제로 분류하지 않았으나 유 출 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민감과 제로 분류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연구 개발성과소유기관 또는 연구개발 성과 소유 연구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⑧ 제4항의 보안과제 또는 제5항의 민감과제-----다음 각 호의 -----
- 1. 보안책임자 지정
- 2. 수행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실시

<신 설>

<신 설>

<신 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 및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국가정보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내용,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분류 기준,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3. 수행 연구자의 외국 접촉 및 외 국인 연구자의 연구수행 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고시하여 정하는 조치
- 4. 수행 연구자가 외국 정부·기 관·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정 보의 관리조치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
-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마련·시행 실태 및 제8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① ----- 제9항에 따른 업무를 국가정보원장과 합동 으로 수행하거나 ----.
- 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안과

 제 · 민감과제 ----- 제9항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
- 제21조의2(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 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보안 전담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

 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 1. 제2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업 무에 대한 지원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

 련된 상담・홍보・교육・실태조

 사
-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 련된 기반 조성
-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
-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 여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 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 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 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

세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	3
행위의 금지) ①	
	_
	_
	_

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 6. (생략)

② ~ ⑤ (생 략)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

<u>.</u>
1. ~ 3. (현행과 같음)
4. 특별한 사유 없이 제21조제9항
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5. 제21조제4항
분류되거나 제21조제5항에 따라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
제의 성과를
<u> </u>
<u>6</u> .· <u>7</u> .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
<u>♥</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
<u>제21</u> 조제4항